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00
------------	------

발의연월일 : 2017. 3. 9.

발 의 자 : 이만희 · 김성원 · 김종회

권석창 · 정인화 · 金成泰

박인숙 · 김도읍 · 윤재옥

박맹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선원은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양항만관청 등 감독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기하는 선내 불만에 대해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선박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선원의 경우 인권침해를 비롯한 선내 불만사항이 발생하여 신고 등을 하려해도 구체적인 절차를 모르거나 선박에 게시되어 있는 관련 절차 등이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어 고충처리 등의 권리 행사에 어려운 점이 존재함.

이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인권보호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선원의 불만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한글과 선원의 해당국 언어로 작성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함께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4항 중 “선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3.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4. 제3호에 따른 선내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5. 해양항만관청, 지방노동관청, 선원노동위원회 등 선원의 근로·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해당국 언어로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① ~ ③ (생략)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제기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선내 불만 처리절차</u>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내</u> ----- ----- ----- --.</p> <p style="text-align: center;"> <u>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u> <u>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u> <u>3.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u> <u>4. 제3호에 따른 선내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u> <u>5. 해양항만관청, 지방노동관청, 선원노동위원회 등 선원의 근로·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u> </p> <p style="text-align: center;"><u>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승</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해당국</u> <u>언어로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u> <u>여야 한다.</u></p>
--